「민법 제4편 친족 제1052조·제1056조·제1058조」

[법률, 2014.12.30., 개정]

원문	번역문
第一千零五十二條 （裁判離婚之原因） 夫妻之一方，有下列情形之一者，他方得向法院請求離婚： 一、重婚。 二、與配偶以外之人合意性交。 三、夫妻之一方對他方為不堪同居之虐待。 四、夫妻之一方對他方之直系親屬為虐待，或夫妻一方之直系親屬對他方為虐	제1052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이 다음 상황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은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중혼인 경우 2.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합의하여 성관계를 한 경우 3.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을 동거할 수 없을 정도로 학대하는 경우 4.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의 직계 친족을 학대하거나, 부부의 일방의 직계 친족이

待，致不堪為共同生活。	상대방을 학대하여서 함께 생활할 수 없을 정도에 다다른 경우
五、夫妻之一方以惡意遺棄他方在繼續狀態中。	5. 부부의 일방이 악의로 상대방을 유기하고 계속 버려둔 상태인 경우
六、夫妻之一方意圖殺害他方。	6.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의 살해를 의도하는 경우
七、有不治之惡疾。	7. 불치의 악성 병질이 있는 경우
八、有重大不治之精神病。	8. 불치의 심각한 정신병이 있는 경우
九、生死不明已逾三年。	9. 3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경우
十、因故意犯罪，經判處有期徒刑逾六個月確定。	10. 고의로 죄를 범하여 6개월 이상의 유기징역 판결이 확정된 경우
有前項以外之重大事由，難以維持婚姻者，夫妻之一方得請求離婚。但其事由應由夫妻之一方負責者，僅他方得請求離婚。	앞 항 외의 다른 심각한 사유로 인하여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부부의 일방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는 부부의 일방에게 책임이 있어서 상대방이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로 한정한다.
第一千零五十六條 （損害賠償） 夫妻之一方，因判決離婚而受有損害者，得向有過失之他方，請求賠償。	제1056조 （손해배상） 부부의 일방이 이혼 판결로 인하여 손해를 입는 경우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前項情形，雖非財產上之損害，受害人亦得請求賠償相當之金額。但以受害人無過失者為限。	앞 항의 상황이 비록 재산상의 손해가 아니어도 손해입은 자는 일정 금액을 배상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손해입은 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前項請求權，不得讓與或繼承。但已依契約承諾或已起訴者，不在此限。	앞 항의 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다. 다만 이미 계약에 따라 승낙하였거나 이미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第一千零五十八條 （財產之取回） 夫妻離婚時，除採用分別財產制者外，各自取回其結婚或變更夫妻財產制時之財產。如有剩	제1058조 （재산의 회수） 부부가 이혼하는 때에 재산분리제를 채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결혼시 또는 부부재산제 변

餘，各依其夫妻財產制之規定分配之。	경시의 재산을 각자 되찾아 가도록 한다. 잉여분은 부부재산제 규정에 따라 각각 분배한다.